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51703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유신, 김형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희홍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2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피고의 아내인 C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1999. 5. 28.경 원고의 D에, 2003. 9. 8.경 원고의 E에, 2005. 11. 23.경 F에 각각 가입하였는데(이하 위 각 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에는 특정 질병 또는 재해로 일정기간 입원할 경우 입원급여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피고인은 각각 여러 보험회사에 건강을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에 분산하여 가입하고, 입원하게 될 경우 1일당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입원이 쉬운 병원을 찾아 형식적 입원을 하거나 반복적인 입원을 한 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3.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죽상경화증 소견으로 순환계용약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받을 만큼 경미한 질병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뇌죽상경화증’으로 19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원고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30,895,000원을 교부받았다.”라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1. 12. 20.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31호).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7), 2023. 2. 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3도2677), 2023. 4. 6.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일련의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편취 보험금 중 이 사건 각 보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별지 표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0,895,000원이고, 각 지급보험금에 대한 적정 입원일수와 그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을 보험금 내역은 같은 표 '적정입원일수' 및 '적정보험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13,505,000원을 편취하였고, 이는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편취금 상당액인 13,5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위 13,505,000원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가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정 입원기간보다 오랫동안 입원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 신경통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고통을 받아왔고, 피고의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한 담당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토대로 한 진단과 판단에 의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30,895,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서 인정된 편취액이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손해액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결국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에서 피고의 기망행위 없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은 30,895,000원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은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적정보험금의 합계액인 6,660,000원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별지 표 '손해배상금'란 기재와 같은 합계 13,505,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늦어도 원고가 의료자문 회신을 받은 2017. 1. 12.경에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5. 2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항소 및 상고를 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하였던 점, ② 피고가 실제 앓고 있던 질환이 있었고, 입원기간 중 일부는 적정하게 입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2021. 12. 20. 무렵에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2021. 12. 2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5. 2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505,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등

순번	보험금 지급일자	지급금액 (A)(원)	입원일수	적정보험금 (B)(원)	적정 입원일수	손해배상금 (A)-(B)(원)
1	2012-01-12	640,000	19		14	
2	2012-01-12	1,840,000	19		14	
3	2012-01-12	480,000	19		14	
4	2012-02-24	760,000	19		7	
5	2012-02-24	2,185,000	19		7	
6	2012-02-24	570,000	19		7	
7	2012-04-03	920,000	23		7	
8	2012-04-03	2,645,000	23		7	
9	2012-04-03	690,000	23		7	
10	2013-07-09	640,000	19	160,000	7	480,000
11	2013-07-09	1,840,000	19	460,000	7	1,380,000
12	2013-07-09	480,000	19	120,000	7	360,000
13	2013-08-21	760,000	19	280,000	7	480,000
14	2013-08-21	2,185,000	19	805,000	7	1,380,000
15	2013-08-21	570,000	19	210,000	7	360,000
16	2013-09-26	760,000	19	280,000	7	480,000
17	2013-09-26	2,185,000	19	805,000	7	1,380,000
18	2013-09-26	570,000	19	210,000	7	360,000
19	2015-01-21	640,000	19	160,000	7	480,000
20	2015-01-21	1,840,000	19	460,000	7	1,380,000
21	2015-01-21	480,000	19	120,000	7	360,000
22	2015-03-04	760,000	19	280,000	7	480,000
23	2015-03-04	2,185,000	19	805,000	7	1,380,000
24	2015-03-04	570,000	19	210,000	7	360,000
25	2015-04-01	800,000	20	280,000	7	520,000
26	2015-04-01	2,300,000	20	805,000	7	1,495,000
27	2015-04-01	600,000	20	210,000	7	390,000
합계		30,895,000		6,660,000		13,505,000

1) 원고는 2023. 4. 5.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일부 감축은 그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의 취하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의한다.